

제404회 임시회
'22. 10. 17.(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유상용 의원 등 10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3.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안 제3조)
- 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안 제4조)
- 라.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관리(안 제5조~안 제6조)
- 마.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안 제7조~안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충북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 제정의 법률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약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¹⁾을 들 수 있음.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으로,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부실로 환자 안전 문제 노출

-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²⁾으로 정의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충북도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347개소

1)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안전상비약품 종류 (13개 품목)

효능군(품목수)	품목명
해열진통제(5)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2)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4)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웨스탈골드정, 웨스탈플러스정
파스(2)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이에 일부 의약품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2018)에 따르면, 소비자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문제 노출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 환자안전문제: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미인지(17%), 사용기간 미확인(33%), 주의사항 미인지(38%)
 - ※ 약사법 위반(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주의사항 미 게시, 미교육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 86%
- 아직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도민의 응급 의약품 필요상황에 대응하기는 부족함.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2) 충청도 내 자율 심야약국 운영 미흡

- 정부에서는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의 경우 동 시간대의 수가에 대해 평일 18시~ 익일 09시,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30%를 가산(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도 내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주(8)³⁾, 충주(3), 증평(1)에 불과함. 이 또한 법적 근거 및 강제조항 없이 약국에서 관계 병원의 진료시간 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대부분 23시에 종료되는 등, 운영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61개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충청도 내 약국 4개소(청주1, 충주1, 제천1, 진천1)가 시범 대상에 포함되어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음.

3) 청주 8개 자율 운영 심야약국 중 메디팜큰사랑약국(용암동)은 기존 24시간 자율 운영 중인 심야약국이면서 올해 7월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포함됨.

<충청북도 내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개요>

- 실시기간 : 2022. 7. ~ 12.
- 실시시군 : 4개소(청주 1, 충주 1, 제천 1, 진천 1)
- 운영시간 : 22시 ~ 익일 1시(3H)
- 지원내용 : 인건비(시간당 3만원), 홍보비, 설문조사 홍보비(1회) 등

- 아직까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약료공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은 아니지만, 충북의 경우 약국의 야간, 심야시간대 운영이 미흡함.
-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충청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충북도 내 자율 운영 및 복지부 지원 심야약국 현황 (2022. 7. 기준)>

시·군명	약국명	소재지	운영시간	비고
청주시 (8)	메디팜큰사랑약국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약국1
	윽티마청주제일약국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09시~23시	
	성화열린약국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09시~23시	
	신세계약국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09시~23시	
	청주상당약국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09시~24시	주말 : 09시~22시
	인화약국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1시~23시	
	밝은약국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09시~23시	
	아이약국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08시~23시	주말 : 09시~18시
충주시 (3)	안재경약국	충주시 연수동	09시~23시30분	
	이수약국	충주시 금릉동	09시~24시	
	충주프라자약국	충주시 칠금동	08시~23시	
	남산태평양약국	충주시 교현동	09시~익일 01시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약국2
증평군 (1)	성가약국	증평군 증평읍	09시~23시	
제천시 (1)	나은약국	제천시 명동	09시~익일 01시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약국3
진천군 (1)	중앙약국	진천군 진천읍	09시~익일 01시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약국4

-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2개 시·도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 내 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2022. 7. 기준)>

시도명	참여약국 수 (2022년)			
	자치단체지원(114개소)			복지부 지원* (61개소)
	개소수	운영시간	지원내용	개소수
충청북도	-	-	-	4개소
서울특별시	34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535,000천원 (서울시 100%) - (단 가) <u>2.6만원~4만원/시간</u> * 판매건수에 비례해 운영비 지원	-
부산광역시	4개소	22시~24시	- (사업비) 92,600천원 (부산시 100%) - (단 가) <u>3만원/시간</u>	8개소
대구광역시	삼야1개소 자정1개소 365 11개소	22시~익일6시 21시~24시 09시~20시	- (사업비) 200,000천원 (대구시 100%) - (단 가) <u>2.4만원~2.5만원/시간</u>	-
인천광역시	15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374,100천원 (인천시 50%, 시군구 50%) - (단 가) <u>3만원/시간</u>	-
광주광역시	5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68,000천원 (광주시 100%) - (단 가) <u>3만원/시간</u>	-
대전광역시	2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109,000천원 (대전시 100%) - (단 가) <u>3만원/시간</u>	2개소
울산광역시	1개소	22시~익일 02시	- (사업비) 45,000천원 (울산시 100%) - (단 가) <u>3만원/시간</u>	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	-	-	2개소
경기도	20개소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690,000천원 (경기도 30%, 시군구 70%) - (단 가) <u>3만원/시간</u>	19개소
강원도	-	-	-	4개소
충청남도	4개소 (천안시)	22시~익일 01시	- (사업비) 65,700천원 (천안시 100%) - (단 가) <u>3만원/시간</u>	5개소
전라북도	-	-	-	5개소
전라남도	4개소	22시~24시	- (사업비) 131,400천원 (전남 30%, 시군 70%) - (단 가) <u>5만원/시간</u>	2개소
경상북도	-	-	-	7개소
경상남도	5개소	22시~24시 (진주시만 21시~23시)	- (사업비) 127,750천원 (경남 100%) - (단 가) <u>3.5만원/시간</u>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7개소	읍·면 20시~23시 동 22시~24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사업비) 134,000천원 (제주 100%) - (단 가) <u>2.7만원/시간</u>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약국”으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당 사업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홍보와 관련해서는 도 및 시·군 차원의 별도 홍보 외에, 현재 대한 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E-gen(www.e-gen.or.kr)을 통해 약국 운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연 2회 이상 이용실태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에 대해 규정하였고,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는 보조금의 관리 해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근거로서 타당함.
- 안 제9조는, 시·군 및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충청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보건의료기본법」 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다만, 공공심야약국 지정 제도를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도의 경우, 읍면지역에서는 나홀로 약사들의 업무 부담에 따른 기피 등으로 참여 약국수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 제주도 공공심야약국 개소수: 12곳('17) → 5곳('18) → 7곳('22)
 - 충북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나 자율 운영 심야약국이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 내 군지역의 경우 참여약국의 확보나 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약사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 이후 오히려 지역 간 약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때, 상기의 우려 점을 면밀히 검토·감안하여 충청도 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참고 1**충청북도 내 시군별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2022. 6. 기준)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중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전체약국수	697	368	89	54	16	20	25	25	39	11	40	10
안전상비약품 판매처	1,347	750	182	84	14	29	23	37	87	11	110	20

참고 2**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 총복 현황**

- 1) 총복의 현재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개요, 2022. 7월 기준)
- 실시기간 : 2022. 7. ~ 12.
 - 실시시군 : 4개소(청주 1, 충주 1, 제천 1, 진천 1)
 - 지원내용 : 인건비(시간당 3만원), 홍보비, 설문조사 홍보비(1회) 등

2) 총복 지원사업 관련 약국 이용실적 자료(7~8월 자료)

① 해당 시군별 이용자수(명)

구분	합계	청주 (메디팜큰사랑약국)	충주 (남산태평양약국)	제천 (나은약국)	진천 (중앙약국)
계	5,041	4,460	142	201	238
7월	2,366	2,125	64	67	110
8월	2,675	2,335	78	134	128

② 공공심야약국 이용내역(건, %)

- 청주시 메디팜큰사랑약국의 경우, 처방약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24시간 운영 중인 심야병원과 함께 있기 때문임.

구분	합계		청주 (메디팜큰사랑약국)		충주 (남산태평양약국)		제천 (나은약국)		진천 (중앙약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1,276	100%	10,212	100%	217	100%	377	100%	470	100%
처방약	6,277	56%	6,249	61%	7	3%	21	6%	0	0%
비처방약	4,004	36%	3,249	32%	167	77%	258	68%	330	70.2%
의약품	623	5%	478	5%	32	15%	45	12%	68	14.5%
상담, 기타	372	3%	236	2%	11	5%	53	14%	72	15.3%

※ 1명 당 이용내역은 1건 이상(예시: 1명이 의약품 3개 구입 : 3건)

③ 공공심야약국 이용실적(명, %)

구분		합계		청주 (메디팜큰사랑)		충주 (남산태평양)		제천 (나은)		진천 (중앙)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계		5,041	100%	4,460	100%	142	100%	201	100%	238	100%
성 별	남	3,013	54%	2,414	54%	69	49%	122	61%	134	56%
	여	2,528	46%	2,046	46%	73	51%	79	39%	104	44%
시 간 대 별	22시~23시	3,468	63%	2,870	64%	76	53%	118	59%	116	49%
	23시~24시	974	17%	689	16%	38	27%	54	27%	75	31%
	24시~01시	1,099	20%	901	20%	28	20%	29	14%	47	20%
연 령 대 별	20대미만	568	11%	520	12%	0	0%	7	4%	10	4%
	20대	943	17%	769	17%	30	21%	37	18%	24	10%
	30대	1,213	22%	936	21%	20	14%	75	37%	62	26%
	40대	1,270	23%	1002	22%	18	13%	50	25%	82	35%
	50대	949	17%	783	18%	34	24%	19	10%	31	13%
	60대이상	598	10%	450	10%	40	28%	13	6%	29	12%